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4. 29 선고 2020가단5826 판결 [보증금 반환 등 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4. 15.

판 결 선 고 2021. 4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9,222,2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7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 리스지원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보증금 47,560,000원[60,000,000원 - (주)C 보관 보증금 12,440,000원]과 자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1,662,200원[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원금 합계 11,662,200원(월 1,060,200원 × 11개월)]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59,222,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. 7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손원락

별지